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895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 10 고성 군 수
- 나. 회 부 일 자 : 2005. 1. 11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1. 15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생활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개정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4조)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또는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소유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오수·분뇨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16조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16조가 2004. 1. 29일 삭제되고 2004. 1. 29일 법률 제7129호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관련법인 관광진흥법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우리군의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내역과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자와 사용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하였으므로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 질의 및 답변

- 문 : 모법에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답 : 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 : 군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가?
- 답 : 70개가 있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5. 1.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